

-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(변경)안불합리에 따른
청원(거의2동)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청원일자 : 2002년 10월 24일
- 나. 청 원 자 : 구미시 거의동 386번지 김정무 외 16인
- 다.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24일
- 라. 상정일자 : 2002년 10월 28일
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의원 박 배 원
- 나. 청원내용
 - 도·농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(변경)안에 의하면 거의동 금오공대 이전부지 정문의 앞쪽에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 우려.
 - 주민들의 많은 땅이 4공단조성 및 진입도로, 금오공대 이전부지 등 국책사업의 부지로 편입되고 남은 땅마저 공공공지로 지정되면 생존권 박탈 위기감 팽배.
 - 금오공대 정문부터는 상당한 면적의 주차장과 공원이 확보되어 있어 추가로 중복되는 시설인 공공공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거지역으로의 지정을 요망.

3. 검토의견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64조와 제 65조 규정의 공공 공지의 설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감안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재정비(안)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